

## 시공권 및 유치권 조건부 포기 약정서

공사에 대한 표시

|            |  |          |      |    |
|--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|----|
| 위 치        |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65-5 (지분 전부 5432분의 610) |          |      |    |
| 건축주        | 권  |          |      |    |
| 건축허가<br>내용 | 허가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면적 (㎡)  | 주용도  | 비고 |
|            | 2018-종합허가과-신축허가-56                       | 1,141.61 | 단독주택 |    |

“시공사”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 내용의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( 년 월 체결, 계약금액 원)에 따른 시공권 및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, 권한 및 법적 지위와 사업부지와 시공 중인 공사현장 일체 (“시공권 등”)를 주식회사 위편당 (“회사”) 또는 ‘회사’가 지칭하는 자에게 이전한다. 이 때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“시공사”가 부담한다. 또한, 이전 시에 유치권은 일결 발생하지 않으며 하도급업체의 미지급금은 본 건축과 무관하게 시공사가 부담한다. 만약, 하도급업체가 본 사업장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제반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

- 가. ‘시행사’에게 부도, 파산, 회생절차, 청산 등의 개시신청 및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
- 나. ‘회사’와 협의 없이 최초 계약시점의 예정공정률 대비 설계/감리자의 공정률 계산표 또는 ‘회사’의 공정확인상 실행공정률 (누계)이 10%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
- 다. ‘클라우드 펀딩 계약서’ 제7조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
- 라. 대상건물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‘회사’가 판단되는 경우
- 마. ‘회사’의 승인 없이 대출약정서상 이차지급이 7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

2018년 9월 19일

| 구분  | 계약 주체 정보 |       | 직위 및 서명 |
|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시공사 | 상호       | (주) 해 | 대표이사    |
|     | 사업자등록번호  |       |         |
|     | 주소       |       |         |
|     | 연락처      |       |         |